

# 2020

## KOTRA 도쿄 IP-DESK

### 정보레터 모음집



## 일본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 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서 상표 등록을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는, 출원인 분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 사항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심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였습니다.

일본 특허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JPO Status Report”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출원에서 1차 심사통지(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은 5.9개월이었습니다.

### 〈상표 심사 착수상황 (심사 미착수 안건)〉

분야(심사실)	2020년 1월에 심사 착수되어 있는 출원의 출원시기	각 심사실의 주된 담당 구분(류)
화학	2018/12~2019/01	1, 2, 3, 4, 5
식품	2019/03	29, 30, 31, 32, 33
기계	2019/04	6, 7, 8, 9, 10, 11, 12, 13, 19
잡화/섬유	2019/01~2019/02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34
산업 서비스	2019/01~2019/02	35, 36, 37, 38, 39, 40
일반 서비스	2019/01~2019/02	41, 42, 43, 44, 45
국제상표등록출원	2019/01	

※ 출처 :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그러나, 최근 출원 건수의 증가에 따라 일본의 상표 출원 심사는 장기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 착수되어 있는 출원은 주로 2018년 12월~2019년 2월에 출원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특허청은 새로운 시도로써, 1차 심사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2개월 정도 빨리 통지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2018년 10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은 이하의 (1) 및 (2)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출원입니다.

(1) 출원시에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 「상표법 시행규칙」 또는 「상품·서비스 국제 분류표(니스 분류)」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한 상표출원일 것

(2) 심사 착수시까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표출원일 것

나아가, 일본 특허청은 2020년 1월 23일에, 패스트트랙 심사의 심사 개시까지의 기간을 더욱 단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의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착수됩니다.

현재의 운용에서는 일반적인 심사 기간(약 12개월)보다 약 2개월 빠르게 심사되므로,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된 출원이라 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운용에서는,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심사 착수되므로, 현재의 운용보다도 약 4개월이나 더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운용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안건입니다.

## 건물의 외관 또는 내장의 디자인 등록, 2020년 4월 1일부터 개시

일본의 디자인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 일부 개정안이 2019년 11월 1일 내각 회의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본의 디자인법은 꽤나 크게 변경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디자인법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부동산)의 외관이나 내장(공간 디자인)도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으로 된 점입니다.

### 1. 건물(부동산)의 외관

현행법에서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품만이며, 또한 양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할 수 없는 건축물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하의 ①과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이라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① 토지의 정착물(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일 것

② 인공 구조물일 것(토목 구조물을 포함)

예) 주택, 사무실, 연구소, 공장, 호텔, 백화점, 음식점, 병원, 박물관, 도서관, 극장, 역사(驛舎), 신사(神社), 교량, 복합 건축물\* 등

\* 복합 건축물 :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하는 대규모 시설 등

## 2. 건물의 내장(공간 디자인)

현행법에서 복수 개의 물품(테이블, 의자, 조명 기구 등)이나 건축물(벽이나 바닥디자인 등) 등으로 구성되는 내장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하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장 디자인에 대해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의 내부일 것
- ② 복수 개의 디자인법상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畫像)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③ 내장(인테리어)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것

예) 카페의 인테리어, 오피스 집무실의 인테리어, 자동차 전시 공간의 인테리어, 수술실의 인테리어, 관광 열차의 인테리어 등

## 3. 코멘트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은 종래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스스로 주장을 증명하려면 고도의 창작성, 주지성, 출처 혼동 등이 요구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에 대해 디자인법상 보호가 가능하게 된 점은, 독창적인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는 기업에게, 브랜드 보호 강화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사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이 타인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을 사용할 때에는, 예를 들어 사전에 체크 조사를 하는 등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지재권 라이선스 계약시의 유의점일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자사 보호와 타사 견제의 차원을 넘어, 지재권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이한 기술, 업종이 융합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욱더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지재권을 둘러싼 계약 조항 등에 관하여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테마는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로는 볼 수 없지만, 특히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계약을 맺을 때에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라이선시에 의한 개량 기술 개발

라이선시에 의해 개량 기술이 개발된 경우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그 개량 기술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시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량 기술에 대해 보고 의무, 실시권 허락, 양도, 공유 등의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 2. 자신(라이선서)의 권리 하자 및 타인 권리 침해에 대한 대비

㉠ 해당 권리가 현존한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이선시와의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은 계약 전에,

자사 권리에 무효나 취소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자사의 실시가 타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㉞ 또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안전 장치로서, 해당 권리가 무효/취소로 된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로열티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불반환 조항)이나, 라이선스의 실시가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조항(불보증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라이선시에 의한 비밀 정보 누설

라이선시의 수비(守秘)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선시쪽 인원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거나, 비밀 정보의 구체적 특정, 라이선시쪽 비밀 관리 태세의 감사(監査)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4. 독점적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

㉟ 말 그대로 라이선시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권리의 내용, 지역, 기간 등에 있어 다른 라이선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㉞ 또한, 자신(라이선서)에게도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사 실시를 유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5. 기타 유의점

그 밖에도, 라이선시의 자본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기업 매각), 서브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로열티 확보를 위한 특약, 계약 종료 후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 6. 코멘트

라이선스 계약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창조적이어서 이른바 “사적(私的) 자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재 분야에서 축적된 실례(實例)에

기반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의 계약 조항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나 자본, 인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분쟁의 확대, 산업 및 비즈니스의 현저한 융합 경향 등을 볼 때에, 지재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정보 보급 및 확산은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 지재권관련 과제 및 대응책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스타트업 지재 전략 구축 지원 프로그램(IPAS)에 관한 사례집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업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애로사항에 유사한 테마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보유 기술을 권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방지의 관점에서 각 제조 공정별 특징에 따라 권리화냐 노하우 관리냐를 분별하도록 조언한 사례입니다.

#### 〈사례 A〉

구체적으로, 전문가 멘토링단은, 스타트업 기업 A가 양산화를 위해 위탁 제조를 하려

는 케이스에서, 제조 공정 일람을 정리하도록 한 후, 예를 들어 사원의 감각으로 조정하는 공정 등은 타사가 본다 하여도 모방하기 어려우므로 노하우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사례 B〉

유사한 케이스로서 다만 해외 위탁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만, 전문가 멘토링단은, 스타트업 기업 B의 핵심 기술이 관계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이 아니라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하여 해외 위탁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품의 내부 구조, 해당 국내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 2. 보유 기술의 라이선스 상대(라이선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 〈사례 C〉

스타트업 기업 C의 제품의 향후 시장 확장이 예상되거나 또는 시장 확장의 필요성이 클 때에, 전문가 멘토링단은, 통상적인 거래처인 제조 공장 외에도, 양질의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판매 대리점을 라이선스 상대로 삼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 〈사례 D〉

스타트업 기업 D가 보유한 우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하려 할 때에, 전문가 멘토링단은, 보유 AI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부품 제조사 E뿐 아니라,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품 메이커에 대해서도 부품 제조사 E와 협업하여 라이선스 상대로 검토할 것을 스타트업 기업 D에게 조언하였습니다.

## 3. 코멘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분들에게 있어, 각 단계, 각 상황에서 닥쳐오는 지재 이슈의 고비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이슈들에 대해 상세하게 짧은 지면 안에 담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전략과 경험을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 학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계획 대화 심리」의 운용 개시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지난달부터 특허 무효 심판에 있어 계획 대화 심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집중 심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계획 대화 심리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대상 사건 및 절차 요건

계획 대화 심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i)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그에 대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ii) 양 당사자(청구인 및 피청구인)가 계획 대화 심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심판장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심판장이 직권 판단 하더라도 어느 한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계획 대화 심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취지 및 운용 내용

이제까지 무효 심판의 경우, 구두 심리가 행해지더라도, 그 후에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심리 기간이 비효율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참가인, 심판부 등 심판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실일 뿐 아니라, 기술 기반 혁신의 산업 생태계 선순환의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일으키려는 지재 정책, 산업 정책의 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획 대화 심리에서는, 본격적인 구두 심리를 실시하기 전에 양 당사자와 심판부가 비공개로 모여(비대면 원격으로도 가능), 예를 들어, ①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분을 송달한 타이밍에 심리 스케줄을 결정하고, ②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을 송달한 타이밍에 쟁점을 정리하며, ③ 그 후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쟁점을 압축해 가게 됩니다.

또한, 이른바 non-commitment rule이 적용되어, 즉, 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만 심리 기록으로 남기고, 심리 기록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당사자 발언을 통해 쟁점 정리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 코멘트

소송 경제는 중소기업이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IP5(세계 지적재산을 주도하는 5개의 국가 또는 지역) 등 지재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창의력과 능력에 의해 기술 이노베이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소송 경제 문제를 포함하여 그 밖에도 권리의 보호와 행사, 활용에 있어 중소, 벤처의 기술 자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불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여러분들에게 있어 각국의 최신 제도 및 운용을 최대한 캐치하고 받아들여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계획 대화 심리의 운용이 개시된 점 역시, 일본 시장에서 경쟁자의 특허권을 무효시킬 것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일본에서 어렵게 특허를 확보하더라도 심판이나 소송을 당하면 시간 및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일본 출원을 주저하시는 우리 기업분들에게 하나의 정보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특허청의 STATUS REPORT 2020 발간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지난 4월에 STATUS REPORT 2020을 발간하였습니다. STATUS REPORT는 연차 보고서와 더불어, 일본 특허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식 재산 통계, 제도의 운용 및 정책 현황을 집결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하에서는, STATUS REPORT 2020의 내용에 대해 포인트를 잡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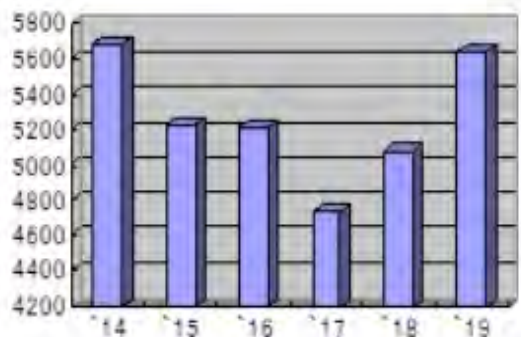
### 1. 한국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 회복 경향 지속

지난해 우리나라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은 5,634건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승 폭의 면에서, 전년도 5,082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여 2014년

의 5,682건 이래 최대의 출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 특허 실무의 권리자 프렌들리 환경에 대한 이해 확산과, 2018년에 시작된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 건수 최근 추이〉



## 2. 일본 특허 실무의 권리자 프렌들리 환경

### (1) 신속성

일본에서는 지난해 특허출원 심사에 있어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9.3개월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그리고 심사 품질에 있어서도 90%를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심판 등의 심리 기간에 있어서도, 지난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평균 12.3개월, 무효심판이 12.2개월, 이의신청이 7.4개월로서 비교적 신속한 심리 기간을 나타냈습니다.

### (2) 권리 부여성

권리 부여의 측면에서는 지난해, 일단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심사전치(한국의 재심사에 해당)를 통해 58.3%가 특허결정을 받았으며, 설사 심사전치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그 중 68%의 케이스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년 통계로 75.3%의 높은 특허결정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 동년 기준 65.2%).

### (3) 심사관 인터뷰 등의 절차 편의

그 밖에, 지난해 일본 특허청은 3,748건의 심사관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중 713건이 출장 면담, 190건이 원격 영상 면담이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도 22건의 순회 심판정, 44건의 출장 면담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 3. 코멘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특허 권리화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시의적절한 해외 출원 지원 정책에 힘을 얻어, 우리 기업의 일본 특허출원이 반등의 흐름을 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의 일본 특허출원이 증가 경향에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반등 현상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인식

확산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 특허출원 보조금 지원이 맞물려서 이루어 낸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입에 발생한 글로벌 감염병 사태로 세계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이 시기에, 해외 출원 확대라는 작금의 소중한 성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본래의 정책 목표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켓 진출 촉진 및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추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힘을 합쳐 성찰과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화상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디자인법(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 해당)이 시행되어 화상 디자인 자체에 대해 디자인 등록(한국의 “디자인 등록”에 해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旧)디자인법에서는 디자인권(한국의 “디자인권”에 해당)은 특정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벗어난 화

상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화상 디자인은 특정 물품과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조건으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은 특정 물품에 인스톨된 화상이며, 그 물품의 표시부(디스플레이 등)에 표시되는 것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 의장법 하에서의 화상 디자인 등록예〉





개정 디자인법에서는 화상이 특정 물품에 인스톨되어 있거나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될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이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정 의장법 하에서 의장 등록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의 예〉

원칙적으로, 화상 부분을 표현한 도면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물품】 상품 구입용 화상 (웹사이트 화면)

【물품】 아이콘용 화상 (소프트웨어 실행 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

【물품】은 화상의 용도/기능을 특정한 "○○용 화상"라고 기재한다.

【물품】 의료측정 결과 표시용 화상

【물품】 음성재생 제어용 화상

또한, 개정 디자인법에서는 벽면이나 바닥, 인체 등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1〉  
벽면에 투영되는 화상



〈예 2〉  
인체에 투영되는 화상



〈예 3〉  
도로에 투영되는 화상



다만,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 또는 “기기의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용 벽지, 영화나 게임 등의 콘텐츠 화상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기의 기능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 디자인법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등의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화상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서, 향후 화상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디자인법 하에서의 출원 실무 및 심사 실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의 출원을 검토하실 때에는 일본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일본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 1. 디자인법의 개정

일본에서는 개정 디자인법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어서 운용에 관한 Q&A, 심사 기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법의 포인트는, 앞서 마츠나가 전 장관의 연두 소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AI, IoT 등의 신기술 태두에 따른 산업 구조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 ㉡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디자인 권리자·창작자 보호 및 편의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 (1) 화상 디자인 자체, 건축물의 외관, 내장 인테리어가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으로

종래에는 기본적으로 물품성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디자인)을 보호하였으나(전통적

방식), 개정법에서는 종래의 물품성의 틀을 벗어나, 특정 물품과의 일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화상 디자인 자체, 건축물의 외관, 내장 인테리어가 디자인법으로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특정 물품과의 관련성이 없는,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이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화상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상의 표시 디자인 등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심사 기준에 따르면, 벽면이나 바닥, 인체 등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 역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 또는 “기기의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용 벽

지, 영화나 게임 등의 콘텐츠 화상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기의 기능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장 인테리어가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으로 되었는데, 전통적 관점에서는, 건축물의 외관의 경우에는 건축물은 양산성이 없다는 점에서 디자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내장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디자인법으로 보호되지 않아 왔던 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호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었던 영역의 것들을, 산업 구조 및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법의 보호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창작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디자인의 보호 강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보호 확대, 도면 요건 완화 등

개정법에서는, 관련 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이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로 대폭 연장되었고, 또한 관련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늘어났으며, 한 벌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 제출이 간소화되어, 당해 디자인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면 반드시 6면도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 2. 특허법 등의 개정

일본에서는 침해 소송에 관련된 개정 특허법 등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등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우수한 기술 등이 부당하게 편취되어 충분히 구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편취자의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침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 수집 절차의 개선

거래 실정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수년간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에 따라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성상, 특히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은 비단 중소기업 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 전반에 있어서도 갈수록 큰 과제입니다.

즉, 편취자의 은폐,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뿐 아니라, 침해 양태 자체에 내재하는 증거 채집 상의 어려움을 공평 및 분쟁 해결 효율화의 관점에서, 개정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손해 배상액의 확대 인정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애초에 생산 능력이 적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생산,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피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종래의 법에 의하면, 멸실 이익의 보상 등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대기업 등의 고의적 편취 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의 금번 개정법에서는, 권리자의 생산,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료 상당액만큼의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이 2000개라 하면, 그 2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액의 상한이었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예를 들어, 자신보다 많은 10000개의 생산 능력을 가진 편취자에 의해 당해 특허 기술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자신의 생산 능력 2000개를 넘는 편취자의 침해 부분, 즉, 8000개에 대해서는 편취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때에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 상당액에까지 손해액을 확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는 올해 12월에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개정 특허법 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 특허 무효심판 운용의 개선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집중 심리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이 새로운 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부의 주도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구두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심리 스케줄을 정하고 그 스케줄에 의거하여 쟁점을 정리, 확인하는 대화 방식의 계획적 심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non-commitment rule의 적용을 통해 당사자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쟁점 정리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두 심리가 행해지더라도 그 후에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 기반 이노베이션에 저해가 되는 시간/비용 손실의 억제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4. 중소·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에의 지원 강화

#### (1) 스타트업 대상 모델 계약서의 공표

일본 특허청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 재산에 기반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제휴 프로세스를 따라 시계열적으로 각 단계별 교섭시의 모델 계약서를 올해 6월에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의 거래 사례를 상정하여, 공동 연구 개발 등의 연계 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로 교섭시 유의해야 할 점을 법적, 비즈니스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각 단계별이라 함은, 비밀 유지 계약서, 기술 검증(PoC) 계약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중소기업의 IP 가치 평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한편, 일본 특허청은 자금과 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금융상 애로점을 지적

재산의 관점에서 경감하기 위해, 지적 재산과 관련된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IP 비즈니스 상의 컨설팅(개선점 제안)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IP 가치 평가를 위해, 금융 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평가 및 진단, 컨설팅의 전문가를 연결, 매칭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부족 등으로 고전하지 않고, 나아가 적절한 방향성을 갖고 경영 과제를 IP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대학에는 지재 전략 어드바이저를, 스타트업에는 지재 및 비즈니스의 멘토를 파견

일본 특허청은 대학의 발명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창출되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에 지재 전략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여, 핵심 연구 개발 과제의 선별, 권리 취득의 타이밍 등의 설계

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 단계에서부터 라이선스, 기술 이전과 같은 사업화, 권리 활용을 겨냥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재 전략 어드바이저는, 국책 연구 기관, 관련 분야의 기업 등 적절한 파트너와 대형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게끔 조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특허청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도, 지재 전문가와 비즈니스 전문가를 각각 멘토로서 수개월 프로젝트로 제공하여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가진 과제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이 시행 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IPA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 특허청의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20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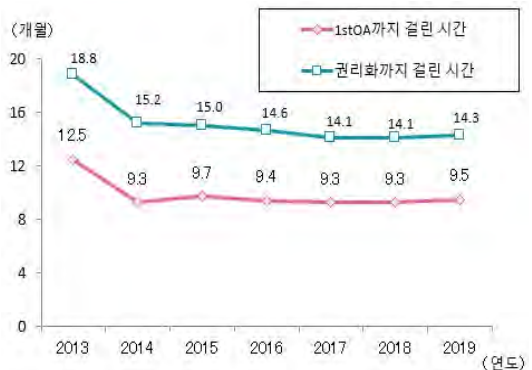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지난 7월에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 2020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는 STATUS REPORT 연차 보고서와 더불어, 일본 특허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식재산 통계, 제도의 운용 및 정책 현황을 집결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하에서는,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 2020의 내용 중에서, 출원인계 관심 및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통계를 일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특허·디자인(디자인)·상표 심사 신속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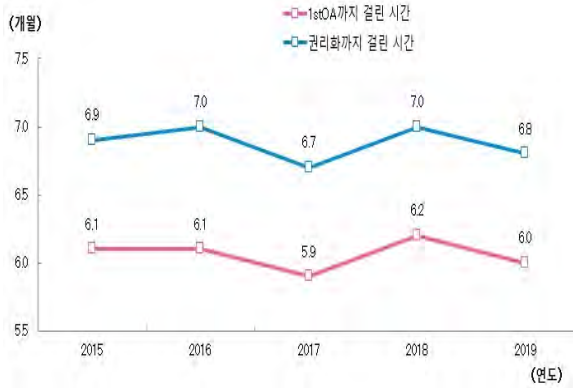
지난해(2019년)에도 특허와 디자인(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심사 적체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 신속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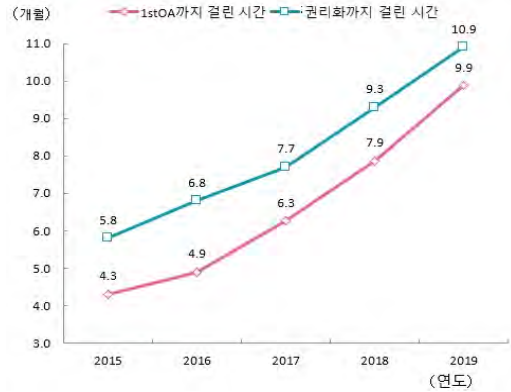




### 〈디자인(디자인) 심사 신속성의 추이〉



### 〈상표 심사 신속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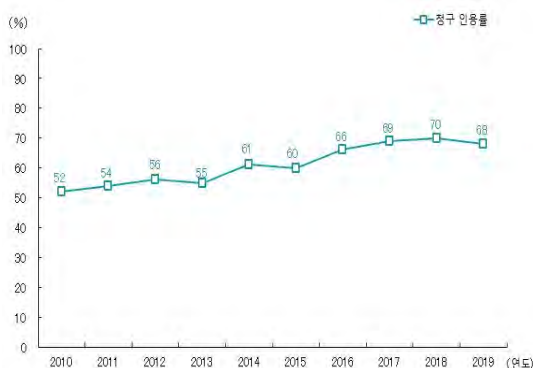
## 2. 특허권 취득성 및 권리 안정성 지표의 추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을 때에 인용되는 비율은 2016년 이후로 6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권리화 후 무효심판을 청구당했을 때에 권리가 살아남는 비율 역시,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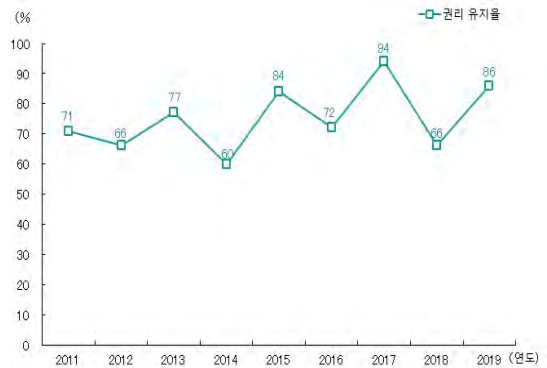
대략 평균적으로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유지율의 경우에는, 연차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연도별 무효심판 건수 및 심판 결과로부터 무효심판의 평균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계산 추론한 것임을 밝힙니다.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인용률의 추이〉



### 〈특허 무효심판 권리 유지율의 추이〉



### 3. 코멘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특허청이 자랑하는 심사 속도 면에서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갈수록 그 장점이 벌어지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상표 심사관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 앞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올해 2월 이후의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종래와 같이 6개월 정도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므로,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취득성 및 권리 안정성의 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권리 획득율과 좀처럼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므로, 특허권 취득디자인점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일본측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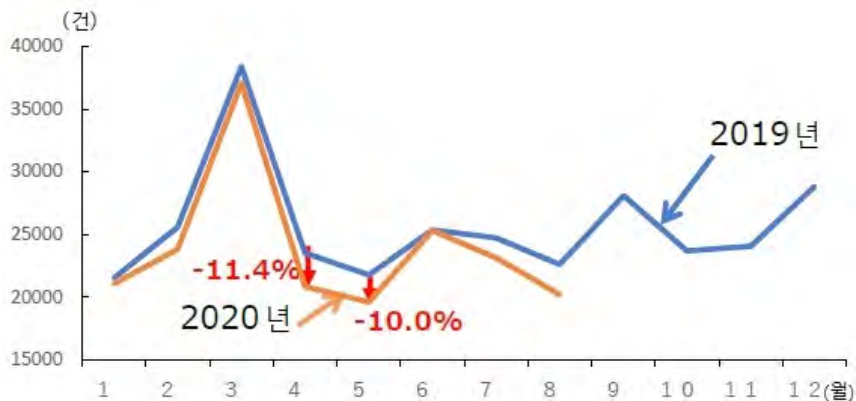
올해 초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번져나간 코로나 감염병은, 출원인 등과 같은 유저, 각국 특허청 등의 행정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각국의 지재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감염병 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향한 논의를 위해 일본 특허청에서 제공된 자료가 있어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1. 코로나 사태 이후 지재 출원 건수는 감소하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지난 4월, 5월 무렵에는 출원과 심사청구 모두 대략 10% 정도 감소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특허출원 건수〉



### 〈월별 특허 심사청구 건수〉



이는 다행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출원 감소는 단기간 동안 제한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의 추이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향후의 출원량 및 심사청구 신청량에 관한 유저 앙케이트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관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바, 앞으로의 추이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지재 행정의 디지털화 진척 정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자 출원 이용률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중에, 일본에서 출원 등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는 비율은 88.7%로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96.8%, 2015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이의신청, 무효 심판 등의 당사자 제 심판,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권리 이전 등과 같이 날인이 필수로 되어 있는 소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첨부물로서 날인 서류 등이 필요한 절차가 500종류 이상에 달함). 일본 당국에서도, 본래부터 디지털화가 더디다는 문제점을, 특히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맞아 강하게 인식하여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

체적으로는, “서면”, “날인”, “대면”을 기본 원칙으로 해 왔던 종래의 제도 및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의 확충, 각종 날인 요건의 폐지, 행정 프로세스 방식의 재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간 재택 근무에 적합한 시스템 안착을 위해, 특허청에서도 원격 면담 및 회의의 확대, 심사관 재택 근무 등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 3. 코멘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감염병 사태 및 그로 인해 향후 가속화될 언택트 디지털화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검토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지재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출원의 감소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 산업 환경,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과 4차 산업 혁명이 맞물

려 가속화되는 변화의 파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소재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행어와 상표

2020년도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만, 매년 이맘때면 올해의 유행어와 같  
은 것이 거론되고는 합니다. 특히, 금년에  
는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

해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일본에서는 “아  
마비에(アマビエ)”라고 하는 요괴가 화제  
가 되었습니다.



## 〈히고(肥後)국 바닷속 요괴(아마비에)〉

- 교토대 부속도서관 소장

이 요괴에 대해서는, 에도(江戸) 시대에 히고국(지금의 구마모토(熊本)현)에 나타나 “올해부터 6년간은 풍년이 계속되지만, 만약 역병이 유행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고 하고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 중에 “아마비에”의 존재가 이목을 끌어 SNS 등에서는 “아마비에”의 모습을 그린 삽화 등이 다수 게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유행하는 말이 상표 출원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아마비에”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형 광고대리점, 제과 회사 등과 같은 여러 법인·개인이 상표 출원했습니다. 이들 출원인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사용을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찬반 양론을 일으켜, 결국 출원을 취하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끈 “아마비에”입니다만, 일본특허청은 “아마비에”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성을 어떻게 판단 했는지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후쿠이(福井)현의 어느 제과 회사가 출원한 “아마비에”로 이루어진 표준 문자 상표에 관한 출원(출원번호 2020-040835)에 대해, 일본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아마비에(アマビエ)”는) 에도(江戸) 시대의 히고(肥後)국 바다에 나타나 역병을 예언하고, 역병이 유행하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요괴의 이름으로서, 2020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종식을 염원하기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많은 이용자들이 이미지 등을 게시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략) 또한, 본원의 지정 상품을 취급하는 분야에서도, 다수의 업자에 의해 문자 “아마비에”, 또는 이것을 나타낸 이미지 등이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원 상표는,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거래자, 수

요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종식 기원의 상징”을 나타낸 것으로 인식하  
는데에 그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요  
자 등이 누군가의 업무에 관한 상품임을 인  
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수요자에게 익숙한 상품을 떠올리면,  
“아마비에”보다 훨씬 유명한 요괴 등의 이  
름이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문자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아마비에”에만  
식별 표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표라  
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  
니지만, 유행어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에  
게 사용되어 식별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급  
격히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  
례로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행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것은 아니지만, 본건은, 특히 공익적으  
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특정 주체에게 독점  
시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심사 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한 케이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국 당국의 관점에 의해서  
도 많이 달라지며, 또한 같은 나라의 출원

이라 하더라도 거래 및 사용 실정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인 바, 그 나라의 유행어에 관련  
된 표장을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상표  
출원하실 때에는, 심사 트렌드 및 사용 상  
황에 관한 현지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현  
명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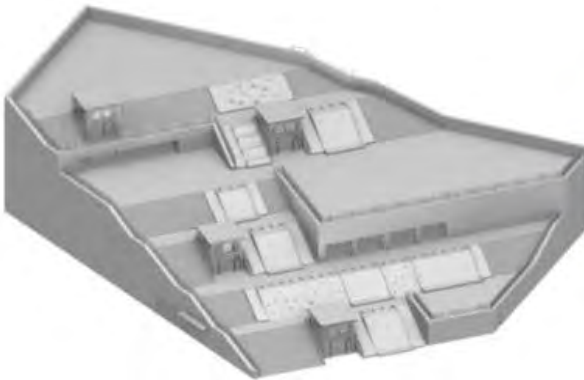
##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 디자인의 첫 등록 케이스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디자인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이 시행되어, 건축물, 인테리어, 그리고 화상 디자인 자체가 새롭게 보호 대상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이하의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 디자인이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디자인 등록되었습니다.

### (1) 건축물 디자인

① 디자인 등록 제 1671773호 “상업용 건축물” (㈜퍼스트 리테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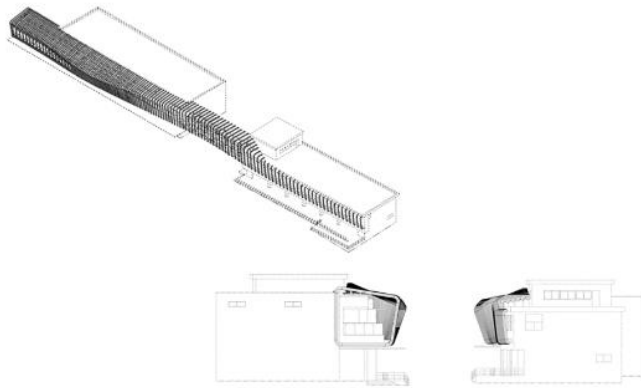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신청 有

<(참고) 유니클로PARK 요코하마 베이사이드점 ((주)퍼스트 리테일링 제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② 디자인 등록 제 1671774호 “역사(驛舎)” ((주)동일본 여객철도)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신청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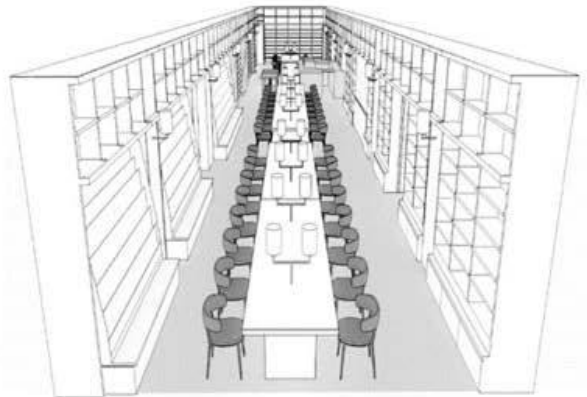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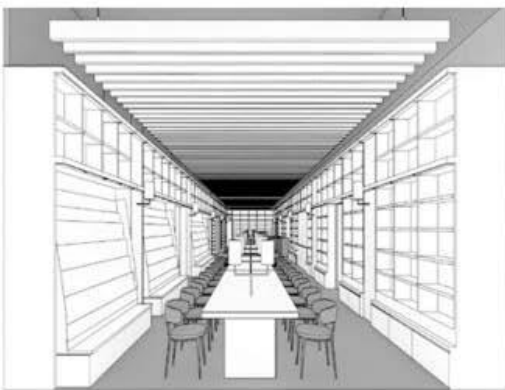
〈(참고) 우에노역 공원출구 역사 ((주)동일본 여객철도 제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 (2) 인테리어 디자인

① 디자인 등록 제 1671152호 “서점의 인테리어” (㈜컬처 컴비니언스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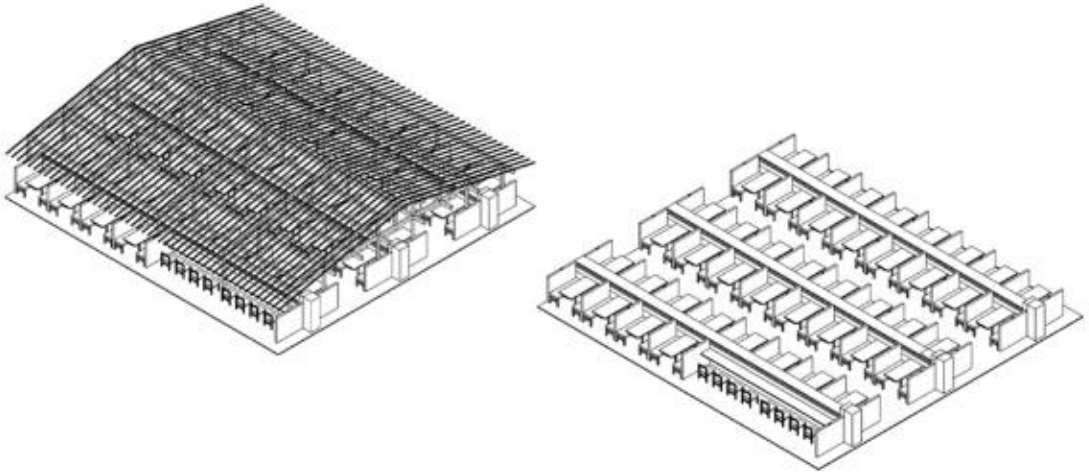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신청 有

〈참고) 츠타야 서점 ((주)컬처 컴비니언스 클럽 제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② 디자인 등록 제 1671153호 “회전초밥 점포의 인테리어” (㈜구라즈시)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신청 有

〈참고〉 구라즈시 아사쿠사ROX점 ((주)구라즈시 제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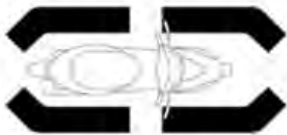
### (3) 화상 디자인

디자인 등록 제 1672383호 “차량 정보 표시용 화상” ((주)고이토 제작소)

〈화상 도면〉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도 1〉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화상 도면 1〉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화상 도면 2〉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도 2〉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도 3〉



〈투명 부분을 나타내는 참고도〉



〈(참고) area marker™ ((주)고이토 제작소 제공)〉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상 디자인, 특징적 고안이 담겨 있는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인테리어) 디자인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합니다.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 디자인을 적절하게 등록하여 타사의 모방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호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사가 개발한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KOTRA 도쿄 IP-DESK  
정보레터 모음집

KOTRA자료 21-116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도쿄무역관 IP-DESK)  
발행일 | 2021년 2월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저자 |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I S B N | 979-1-6490-861-5 (93320)  
979-1-6490-862-2 (95320) (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